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일부개정법률이 '25.3.25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, 토양관리제도 운영 관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주체 변경(개정안 제4조제2, 3항)

- 당초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「토양환경보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후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시·도지사가 통보하는 것으로 함

나.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 및 미실시 사유 마련(개정안 제12조제3, 4항)

-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경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1항을 따르도록 하되, 긴급하게 대책계획을 수립·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

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함

다.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마련(개정안 제17조의6, 제17조의7, 별표4)

-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매출액의 정의,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, 부과기준, 부과 및 납부절차 등을 규정함

라.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가능한 업무 확대(개정안 제18조제3항)

- ‘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’에 더하여 필요시 ‘관련 정보시스템 설치·운영’ 업무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‘토양정화 비용 지원에 관련된 업무’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”를 “시·도지사는”으로, “승인한”을 “제출한”으로, “기본계획 및 지역계획”을 “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7조제3항”을 “법 제17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전단 중 “법 제17조제4항”을 “법 제17조제5항”으로 한다.

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다.

④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

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긴급하게 대책계획을 수립·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17조의6 및 제17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6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) ①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토양정화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(영업정지 대상 토양정화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,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.

② 법 제23조의15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
2.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

③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.

제17조의7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,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8조제3항제1호의2 중 “작성 및 관리”를 “작성,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설치·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10조의4제5항 토양정화 등의 비용 지원에 관련된 업무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(제17조의6제3항 관련)

(단위 : 만원)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령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1.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	법 제23조의10 제3항	500	1,500	3,000
2.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	매출액의 2/100	매출액의 3/100	매출액의 5/100
3. 법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4호	매출액의 2/100	매출액의 3/100	매출액의 5/100
4. 법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6호	매출액의 2/100	매출액의 3/100	매출액의 5/100
5.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7호			
가)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		매출액의 2/100	매출액의 3/100	매출액의 5/100
나)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		매출액의 2/100	매출액의 3/100	매출액의 5/100
6.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9호	매출액의 2/100	매출액의 3/100	매출액의 5/1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
<u>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	<u>③ 시·도지사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제 출한 ----- ----- ----- ----- 기본계획----- ----- -----.
제12조(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</u>

<신 설>

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토양
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
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 략)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
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·고
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
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
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
장에게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특
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내용
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
고,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
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

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
조제1항에 따른다.

④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
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유”란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
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
상의 위해가 있어 긴급하게 대
책계획을 수립·시행할 필요가
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
경우를 말한다.

⑤ 법 제17조제4항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법 제17조제5
항-----

-----.

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7조의6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

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) ①

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매출

액이란 해당 토양정화업자에게

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

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

(영업정지 대상 토양정화업에

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)을 말

한다. 다만, 과징금을 부과하는

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

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

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

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

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

산한 금액을 말하며, 과징금을

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

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

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

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

금액을 말한다.

② 법 제23조의15제1항 단서에

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

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

<신 설>

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
영업실적이 없는 경우

2.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
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
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
이 곤란한 경우

③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른
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
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
표4와 같다.

제17조의7(과징금의 부과 및 납
부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23조
의1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
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
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
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
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
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
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
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
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
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
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
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, 지

제1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· ② (생략)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 다.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 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1의2.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 오염 이력정보의 <u>작성 및 관 리</u> 2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6.·7.</u> (생략)	<u>체 없이 그 사실을 시·도지사 에게 알려야 한다.</u> 제1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.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----- ----- <u>작성,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설치·운 영</u> 2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법 제10조의4제5항 토양정화 등의 비용 지원에 관련된 업 무</u> <u>7.·8.</u>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토양지하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77